

경찰 손실보상제도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김 영 식*

< 목 차 >

- I. 서론
- II. 이론적 논의
- III. 현행 경찰 손실보상제도 운영실태 및 문제점
- IV. 경찰 손실보상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 V. 결론

I. 서론

2013년 3월 5일 손실보상규정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¹⁾ 개정안은 공포 후 시행령 정비, 예산 확보 등 준비과정을 거쳐 1년 후인 2014년 4월 6일부터 시행되었다.

소방관 등 타부처 공무원은 개별 법률에 이미 손실보상 규정이 마련되어 있었으나, 일반 국민을 상대로 가장 광범위하게 범집행을 하고, 업무성격상 많은 경우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해서는 그 동안 손실보상 근거 규정이 없었다. 이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경찰관의 입장에서는 사비를 들여 변상해주거나, 부득이 다른 예산 항목을 전용하여 보상해주는 사례도 빈번했다. 경직법상 손실보상 규정의 신설을 통해 일선 치안현장에서 경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범집행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나아가 국민의 재산권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조교수

1) 새누리당, 경남 거제, 김한표 의원이 대표발의하였고, 본회의 제석의원 235명, 찬성 234명, 기권 1명 등 반대의견 없이 통과되었다.

경찰업무의 특성상 적법한 경찰권행사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입법자들이나 학계에서 경찰상 손실보상의 문제는 큰 관심을 얻지 못하였다. 이러한 입법적 불비 상황에서 경찰관들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임에도 보상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직무수행에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 손실발생시 민원이 야기되어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한 나머지 사비로 보상해주는 사례도 있었다.²⁾ 이런 점에서 경직법상 손실보상 규정의 신설은 국민의 권리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법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직무여건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런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2013년 3월 5일 신설되고, 2014년 4월 6일부터 시행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법·제도적 관점에서의 분석과 실제 실무상 손실보상 업무 처리에 대하여 사례를 검토·분석 하여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제도 도입 후 1년간 전국 지방경찰청에 접수된 손실보상 사례에 대한 승인, 일부승인, 기각, 각하 등 유형별 청구원인 사실, 심의결과,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다.

II. 이론적 논의

행정상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에 관하여는 오늘날 사유재산에 가하여진 특별한 희생은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전보하는 것이 자연법적인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합당하다는 특별희생설이 통설과 관례의 입장이다.³⁾ 실정법적 근거는 헌법 제23조 제3항과 공용침해를 인정하고 있는 개별적 법률상의 보상규정이 행정상 손실보상의 실정법적 근거가 된다.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일반법이 없고 각 개별법이 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2) 경찰청, 「경찰관직무집행법 해설서」, 2013.10, 127면.

3) 서정범·박상희, 「행정법총론」, 세창출판사, 2012, 486면; 대법원 2013.6.14. 선고 2010다9658 판결.

1. 헌법상 보상기준의 변천

우리 헌법상 보상기준에 관한 규정의 변천과정을 보면 제헌헌법 이후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모두 9차례에 걸친 헌법 개정이 있었는데, 그 중 손실보상의 기준규정은 4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즉, 제1공화국의 제헌헌법 제15조 제3항은 ‘상당보상의 원칙’을 규정하였고, 제3공화국헌법 제20조 제3항은 ‘정당보상의 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제4공화국의 이른바 유신헌법 제20조 제3항에서는 ‘보상의 법률유보주의’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제5공화국헌법 제22조 제3항이 ‘이익형량보상의 원칙’을 규정하였고, 제6공화국의 현행헌법 제23조 제3항은 다시 ‘정당보상원칙’을 규정하고 있다.⁴⁾ 우리 헌법상 관련 조항의 변천은 아래 <표.1>과 같다.

<표. 1> 헌법상 손실보상 규정의 변천 과정

제헌헌법 (1948. 7. 17) 제15조 제3항	제3공화국헌법 (헌법 제6호, 1962. 12. 26) 제20조 제3항	제4공화국헌법 (유신헌법, 헌법 제8호, 1972. 12. 27) 제20조 제3항	제5공화국헌법 (헌법 제9호, 1980. 10. 27) 제22조 제3항	제6공화국헌법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제23조 제3항
공공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사용 또는 제한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 보상의 기준과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은 법률로써 하되,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상은 공익 및 관계자의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 법률로 정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헌법상 손실보상의 기준

현행헌법은 ‘정당보상의 원칙’을 취하면서 구체적인 보상액의 산출기준을 법률에 유보하고 있다. 헌법상의 ‘정당보상’의 원칙이 재산권침해로 인한 손실보상의 기준·범위에 있어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지에 대해 학설은 일반적으로 완

4) 박창석, “한국헌법사상 보상규정의 변천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제32집 제5호, 한국공법학회, 2004, 609-610면.

전보상설과 상당보상설 및 절충설이 대립하고 있다.

‘완전보상설’이란 손실보상은 피수용재산이 갖는 재산적 가치를 충분하고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 즉 ‘시가보상’이어야 한다는 견해이다.⁵⁾ 이러한 완전보상설은 다시 ① 재산권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의 전부를 보상하여야 하며, 부대적 손실도 포함한다고 보는 입장(손실전부보상설)과 ② 손실보상은 재산권에 대한 보상이므로 피침해재산의 시가·거래가격에 의한 객관적 가치를 완전히 보상하는 것이어야 하지만, 부대적 손실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객관적 가치보상설)으로 나누어지고 있다.⁶⁾

‘상당보상설’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 및 사회적 구속성, 재산권의 공공복리적합의무의 관점에서 공익과 사익을 구분하여 보상 내용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완전한 보상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그것을 하향 평가하여 보상하는 방안도 허용된다고 보는 것으로 나누어진다.⁷⁾ 이것은 현대의 사회복지주의적 이념에 따라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이라는 시각에서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을 적정하게 비교형량하여 합리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보상이어야 한다는 견해이다.⁸⁾ 상당보상설도 상당보상의 내용에 따라 견해가 나누어지는데, ① 완전보상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는 완전보상을 상회하거나 하회할 수도 있다는 입장(완전보상원칙설)과 ②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이면 완전보상을 하회하여도 무방하다고 보는 입장(합리적 보상설) 등이 그것이다.

절충설은 헌법이 규정한 ‘정당한 보상’이란 획일적인 보상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완전보상을 해주어야 하지만 공익상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완전보상을 하회할 수도 있고, 또한 생활보상까지 해 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한다.⁹⁾

현행 헌법상의 정당보상의 원칙은 원칙적으로는 완전보상설을 취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¹⁰⁾ 이에 따라 손실보상은 침해된 재산권의 객관적 가치의 보상은

5) 이상규, 「신행정법론(상)」, 법문사, 1997, 654-656면.

6) 김동희, 「행정법 I」, 박영사, 2004, 533-534면.

7) 김진, “손실보상제도의 법적 개선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제33권 제1호, 대한부동산학회, 2015, 385면.

8)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04, 608-609면.

9) 김남진, 「행정법 I」, 법문사, 2003, 557면.

10)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3, 472면.

물론 그 보상의 시기·방법 등에 제한이 없는 완전한 보상이어야 한다. 즉, 피침해재산권의 객관적인 가치의 손실과 부대적 손실에 대하여도 보상하여야 하는 것이다.

판례도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토지수용에 대한 공시지가 기준 보상과 관련하여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완전보상을 의미하며, 토지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의 가격형성에 미치는 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조정을 거쳐서 객관적인 가치를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소유자가 갖는 주관적인 가치, 투기적 성격을 띠고 우연히 결정된 거래가격 또는 흔히 불리우는 호가, 객관적 가치의 증가에 기여하지 못한 투자비용이나 그 토지 등을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가격 등에 좌우되어서는 안되며, 개발이익은 그 성질상 완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함으로써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토지수용 보상액을 산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헌인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¹¹⁾

대법원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와 관련하여 헌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은 보상청구권의 근거에 관하여서 뿐만 아니라 보상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서도 법률의 규정에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정당한 보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하는 것이라 할 것이나, 투기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가격은 정상적인 객관적 재산가치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배제한다고 하여 완전보상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¹²⁾

한편,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는 일반적인 보상기준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보상기준은 법률에 유보하고 있다. 우리나라 실정법상의 입법례를 보면, 그 손실보상의 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이 대단히 많고, 그 기준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보상’,¹³⁾ ‘정당한 사용료’,¹⁴⁾ ‘정당한 보상금’,¹⁵⁾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는 헌법과 동일하게 ‘정당한 보상’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11) 헌재 2001.4.26. 2000헌바31.

12) 대법원 1993.7.13. 선고 93누2131 판결.

13)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2 제1항; 건축법 제81조 제3항.

14) 징발법 제19조.

15) 특허법 제41조 제3항, 제4항.

Ⅲ. 현행 경찰 손실보상제도 운영실태 및 문제점

1. 현행 손실보상 법체계

신설된 손실보상규정에 의하여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찰 비책임자(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와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 또는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사람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상청구권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 손실보상의 기준 및 금액

경직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할 때 물건을 멸실·훼손한 경우에는 ①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②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 ③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그리고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기타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¹⁶⁾

즉, 경직법상 손실보상은 주관적·심리적 가치를 배제하고 재산의 객관적 가치에 따른 대물적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는 재산권의 객관적 가치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부대적 손실까지 보상하는 것을 의미한다.¹⁷⁾

16)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제9조.

17) 행정상 손실보상의 헌법적 근거인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에 관하여 다수설과 관례는 완전보상설의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완전보상은 피침해재산의 객관적 가치의 보상과 함께 부대적 손실의 보상을 전부 보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 생활보상을 완전보상의 범주에 포함시키며 완전보상을 공용침해가 일어나기 전의 생활과 유사한 생활수준을 회복하도록 하는 보상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반면, 정신적 손해와 개발이익은 완전보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박균성·김재광, 『경찰행정법』, 박영사, 2011, 514면).

2) 지급절차 및 방법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사람은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손실보상청구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5년 3월 1일부터 경찰민원포털 사이트(minwon.police.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고, 우편신청도 가능하다.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해당 청구서를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할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경찰청 또는 지방경찰청에 송부하고,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한다.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소속 경찰공무원과 자격요건(①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②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③ 경찰 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충족하는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지방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¹⁸⁾

손실보상 청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 사실조사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¹⁹⁾

한편, 위원회는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보상신청을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다만,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疎明)하는 경우는 제외)이거나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에는 그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²⁰⁾

18)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제11조.

19)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제13조.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거나 각하 결정을 한 경우 결정일 부터 1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를, 보상금 지급 청구를 각하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각하 통지서’에 결정 내용을 적어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²¹⁾

보상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²²⁾

3) 불복절차

경직법의 손실보상은 시행 초기로 경찰청장 등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의 소송유형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아직 없다. 타 부처의 손실보상에 관한 법적 불복절차를 검토함으로써 경직법상의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절차의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한다.

(1) 행정심판

경직법상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손실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였다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은 사람은 행정심판을 통해 그 결정을 취소시키고 경찰청장 등으로 하여금 다시 결정하도록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법적 성질에 관한 전원합의체판결에서,²³⁾ 동 위원회에서 심의·결

20)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제10조 제3항.

21)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제10조 제4항.

22)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제10조 제5항 및 제6항.

23)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이하에서는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금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가 관련자 및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의·결정, 관련상이자의 장해등급 판정, 관련자 등의 보상금 등의 심의·결정 및 지급, 관련자 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심의·결정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0조, 제11조, 제13조 등은 관련자 등으로서 보상금·의료

정을 받아야만 비로소 보상금 등의 지급 대상자로 확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위원회의 결정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관련자 등으로서 보상금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가 관련자 해당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은 위원회를 상대로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에 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한 불복을 구하는 소송이므로 위에서 본 취소소송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²⁴⁾

(2) 행정소송

또 다른 불복절차로는 행정소송을 생각할 수 있다. 구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하는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였는데,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을 원칙적으로 임의적인 절차로 하였고, 다만, 다른 개별 법률에서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기 전에 필요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심판을 필요적 전치절차로 하였다. 행정심판의 제기가 임의적인 경우 행정소송제기 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도 있고, 행정심판제기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제기할 수도 있다.²⁵⁾

경직법상 행정심판을 필요적 전치절차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임의적 절차로 볼 수 있다. 손실보상청구자는 보상결정에 대하여 항고소송이나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처분의 위법·부당을 다투는 것이고,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지원금·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에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관련자 등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에 의한 보상금 등 지급에 관한 절차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24) 대법원 2008.4.17. 선고 2005두16185 판결.

25) 박균성·김재광, 앞의 책, 540-541면.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다.

2. 전국 지방경찰청 손실보상 청구사례 분석

전국 지방경찰청 손실보상 청구사례 분석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에서 2014년 4월 6일부터 2015년 4월 5일까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청구된 사건현황, 청구원인사실 및 심의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²⁶⁾

<표. 2> 지방청별 손실보상 청구현황 및 심의결과

지방청	계	승인	일부승인	기각	각하
서울	22	16	0	4	2
부산	10	10	0	0	0
대구	7	6	0	1	0
인천	22	22	0	0	0
광주	3	3	0	0	0
대전	3	3	0	0	0
울산	2	2	0	0	0
경기	45	38	3	3	1
강원	3	3	0	0	0
충북	2	1	0	1	0
충남	4	4	0	0	0
전북	5	4	0	0	1
전남	7	5	0	2	0
경북	6	6	0	0	0
경남	10	10	0	0	0
제주	0	0	0	0	0
계	151	133	3	12	3

26) 정보공개청구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보공개청구 서비스 사이트(<https://www.open.go.kr/>)를 활용하여 16개 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하였음.

지난 1년간 전국 지방경찰청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승인결정된 것은 총 133건이다. 청구원인사실은 주로 게임장 단속을 위한 출입문 강제 개문, 112신고 출동 후 진입을 위한 출입문 또는 창문 파손, 자살의심 신고나 오인신고로 인한 도어락 파손 또는 열쇠수리공 출장 요청, 범인·수배자 검거 과정에서 수반되는 재산적 손실 야기 등이다. 한편, 다른 청과 달리 경기청의 경우 살인사건 수사 관련 긴급 현장감식을 위해 벽지와 장판을 파손한 것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결정한 사례가 2건이 있다.

1) 손실보상청구 승인 주요 사례와 문제점

서울청의 2014년 10월 14일 심의사례에서는 “서울 ○○구 소재 전자담배 판매점에 지명수배자 검거 시 수배자가 강력 저항하는 과정에서 영업점 물품이 파손된 것”과 관련하여 수배자가 고의로 영업점 물품을 손괴했다면 재물손괴죄로 추가 입건하고, 영업주는 손실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같은 심의일 사례 중 “서울 ○○구 피의자 집에 집사의 동의를 얻어 수색 후 출입문을 제대로 닫지 않아 당일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 출입문이 파손된” 사안에서는 피의자의 집사가 함께 수색을 하였고, 수색을 마치고 출입문 시정을 집사가 하였다면, 경찰관의 적법한 수색행위와 손실발생과의 상당인과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손실보상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경기청의 승인 사례 중에서 “남자친구가 딸을 납치했다.”는 신고접수 후 남자친구 집으로 출동하여 경찰관이 개문 요구했으나 응답이 없는 등 불응하자 강제 개문하여 피해자를 구출한 사례가 있다. 이 경우는 경찰관의 개문요구를 고의로 거부한 피의자는 손실발생 원인에 대한 책임이 있다. 만일, 피의자가 임차인인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원상복구 의무를 부담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손실액을 공제하고 반환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충남청 2015년 3월 27일 승인 사례 중 “영장집행을 위해 문을 개방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열쇠 수리업자를 불러 디지털 도어락을 손괴”한 사례가 있다. 영장집행 대상자가 영장집행을 거부하기 위해 출입문 개방요구에 대해 고의로 불응한 경우로서 이 경우에도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손실보상청구를 기각하거나 감액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권자가 소유주(임대인)인 경우에는 위의 경기청의 사례와 같이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경남청 2014년 11월 11일 손실보상청구 사례 중 “식당 폭행관련, 폭행을 제지하던 중 경찰관에게 폭행,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식당 내 있던 식탁을 손괴한 것에 대한 보상청구”건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 의해 재산적 손실이 발생한 것이라면 손실보상결정이 타당하다. 그러나 피의자가 체포과정에서 고의로 식당내 물건을 파손한 것이라면 재물손괴죄로 추가 입건해야 하고, 식당주는 재산적 손실에 대하여 손실보상이 아니라 피의자와 합의를 통하여 손해배상을 받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피의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한다.

2) 손실보상청구 일부승인 사례와 문제점

일부승인 결정사례는 경기청에서 3건이 있었고, 감액사유는 과다청구이다. 실무적으로 청구시 제출하는 견적서 이외에 해당 지방청에서 비교견적을 통해 과다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경찰에서 제출받은 비교견적서와 제출한 견적서의 수리·보수 등의 내용이 동일하고 견적금액이 근소한 차이라면 청구금액에 대한 전부승인결정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견적금액의 차이가 통상의 범위를 초과한다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복수의 비교견적을 통해 청구금액을 감액결정할 수 있다.

또한, 원칙적으로 손실보상은 물건을 멸실·훼손한 경우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으면 그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일부승인(감액결정) 사례 중에서 경찰이 청구인의 휴대폰을 압수하여 문자 등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파손되어 청구인이 휴대폰 구매가격 101만 3천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파손부위(기판)에 대한 수리비 18만 3천원으로 감액 결정한 사례가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일부승인(감액결정)사례에서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의 감액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이다. 사례의 경우 청구인이 신고 후 현관문을 잠귀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순찰차에 비치된 장비를 이용하여 경찰관이 출입문을 파손하고 진입한 것이다. 위원회에서는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고 과다 청구되어 감액결정(청구액 57만원에 대해 45만원 보상 결정)한다고 의결하였다. 그러나 손실발생 원인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귀책사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감액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오로지 위원회의 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다.

3) 손실보상청구 기각사례와 문제점

위원회는 심의결과 경직법상 손실보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의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손실보상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해야 한다.

분석사례 중 기각사례는 총 12건이다. 서울청의 4건의 기각 사례와 전남청의 2건의 기각 사례는 “손실발생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를 이유로 기각 결정되었다. 이 경우도 감액 기준과 마찬가지로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로서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의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경기청의 3건의 기각 사례 중 첫 번째 사례는 불법게임장 단속 중 장소 오인으로 출입문을 파손한 경우로 기각 결정되었다. 경찰은 2층 불법게임장을 3층으로 오인 신고한 정보원의 말을 믿고 건물주가 살고 있는 3층 가정집 출입문을 파손하고 진입하였다. 경찰은 건물주를 상대로 수사하여 2층 영업장을 단속하였다. 위원회에서 기각 결정을 한 사유는 명확하지 않으나, 오인 파손이더라도 적법한 공권력 행사라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만일 건물주가 범죄행위의 공범이거나 방조범이고, 경찰의 출입문 개문 요구에 불응하였다면 “손실발생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로 인정되어 보상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 두 번째는 대차 검문검색 중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의 자동조작 트렁크 문을 경찰관이 강제로 닫아 고장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손실보상 청구된 사례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차량 검문검색 당시 고장에 대한 민원제기가 없었고, 자동조작 트렁크 문이 경찰관 행위로 파손되었는지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세 번째 사례는 딸의 정신착란증세로 모녀간 다툼이 있었던 상황에서 경찰관의 개문 요구에 거부하여 현관문을 파손한 경우로서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충북청의 1건의 기각 사례는 교통법규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이 다른 차량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어 경찰관이 수신호로 후진시켰는데, 도로 둔덕에 차량 일부가 파손된 사례이다. 위원회는 경찰관의 수신호와 자동차 파손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손실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운전자의 부주의라고 판단하여 기각하였다.

대구청의 기각 사례는 마약사범 검거과정에서 피의자가 체포를 면하기 위해 주차장의 철재 서터를 파손한 것으로 전적으로 피의자의 고의에 의한 파손으로 위원회에서 기각 결정되었고, 전남청의 기각 사례 2건은 모두 가정폭력 신고와 자살의심 신고에 대해 출동한 경찰관의 출입문 개방 요구에 불응하여 출입문과 잠금장치를 손괴한 사건으로 위원회는 “손실발생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로 판단하여 기각 결정하였다.

4) 손실보상청구 각하결정 사례와 문제점

경직법상 손실보상청구 각하 사유는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보상신청을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다만,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疎明)하는 경우는 제외)” 또는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이다.²⁷⁾

각하 결정은 전국적으로 총 3건이 있다. 서울청의 2건의 각하 사례는 청구요건 서류가 미비한 경우와 청구권자가 아닌 자가 청구한 사례이다. 그리고 경기청의 1건과 전북청의 1건의 각하 사례는 사안이 2014년 4월 6일 경직법상 손실보상제도 시행 전에 발생한 사건을 이유로 각하되었다.

경기청과 전북청의 경우 각하 사유로 명확하다고 볼 수 있으나, 서울청의 경우 구비서류 미비나 청구권자 적격여부는 시정이나 보완이 가능한 경우라면 각하로 처리하기 보다는 구비서류 보완 또는 청구권자 변경을 통해 접수해야 한다. 손실보상 청구의 요건과 절차가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각하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27)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

IV. 경찰 손실보상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절차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현행 경찰 손실보상제도상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사람이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사건을 심의할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서 접수 후 송부기일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행정처리 지연으로 인한 청구권자의 권익침해의 우려가 있다.

또한,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송부 받은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은 소속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청구사건이 심의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아 청구권자로서는 심의개시 여부와 심의결과 예정일에 대해 전혀 예측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개시 후 보상여부 결정까지의 심의기일, 재심의 절차 및 기일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권력 행사로 인해 예기치 못한 재산적 피해를 입은 청구권자로서는 경찰관청의 은혜적 재량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위의 실태분석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청구권자가 위원회의 보상금 감액결정이나 기각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제기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보상금 지급 결정을 한 경우 지급기일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청구권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상금 지급 청구서 접수부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여부 결정의 통지까지 명시적인 처리기한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경직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및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을 준용할 수 있으나 하위법령에 손실보상 민원업무 처리절차를 명문화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민원처리법시행령)」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그 민원사무의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에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민원사무의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처리기간을 정할 때에는 접수기관·

경유기관·협의기관(다른 기관과 사전협의를 필요한 경우만 해당) 및 처분기관 등 처리단계별로 처리기간을 구분하여야 한다. 또한,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관계 법령 등에 분명히 밝히고, 민원사무편람에 수록하여야 한다.²⁸⁾ 한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하거나 편람을 갖추어 두어 민원인이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²⁹⁾ 이에 따라 경찰청은 경찰민원사무편람을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손실보상청구와 관련하여 접수단계부터 결과통지 및 불복절차고지까지 각 단계별 처리기간을 명확히 하여 민원인들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경찰민원사무편람에 손실보상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2. 실질적 권익보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행 경직법상 손실보상제도는 청구인의 손실보상청구에 대하여 경찰청(지방청)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청구금액에 대하여 일부 승인 또는 청구 기각의 심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은 청구인에게 감액결정이나 청구기각 결정을 통보하게 된다. 최종 결정이 통보되기 전까지 청구인에게는 의견진술이나 협의의 기회가 보장되어 있지 않고, 처분에 대한 법적 쟁송이외에 재결 절차가 경찰청 차원에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일방적인 감액결정이나 기각결정 후 결과통보를 받은 청구인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행정심판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소송 등 법적 쟁송을 다룰 수밖에 없다. 자칫 당사자 간의 법적 소송을 유발할 우려가 있고, 법적 구제절차에 맡김으로써 소송에 대한 부담으로 청구인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감액결정이나 기각결정의 경우 경찰청소속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당사자와의 보상금 협의·조정 기능을 할 필요가 있다.

1) 의견제출 기회 보장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처분 당사자는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28) 민원처리법시행령 제12조.

29) 민원처리법 제7조.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 제출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³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³¹⁾

동법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손실보상 청구인에게도 의견제출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행 손실보상 업무처리 절차상 청구 접수 후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일 15일전 위원회 개최 통보시 청구인에게 위원회 개최일 전까지 의견제출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재결청 설치

손실보상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후 이에 대한 심의절차,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 후 재결청(경찰청 소속 가칭“중앙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 지방청단위의 손실보상 감액결정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행정쟁송을 통해서만 불복절차를 진행한다면 청구인 뿐 만아니라 경찰의 입장에서도 상당한 소송부담을 갖게 되고 재정적·시간적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지방경찰청 소속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와 경찰청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분하여 경찰청 소속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재결청의 역할을 갖도록 하는 것을 제안한다. 실제 경직법상 손실보상제도 시행 후 1년간 경찰청 소속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청구는 단 한건도 없었고, 대부분 지방경찰청 단위에서 손실보상심의가 이루어 졌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재결청의 설치는 경찰청 소속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청구인의 권익을 보호할 뿐 만아니라 행정쟁송에 따른 부담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재결청의 설치는 실태분석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심의의 통일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개선안으로는 현행 경직법상의 단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경찰청 소속의 ‘중앙손실보상심의위원회’와 각 지방경찰청 소속의 ‘지역손실보상심의위원회’로 구분하고, 설치 근거는 경직법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에, 기타 세부 사항은 훈령에 근거를 둘 수 있다.

30) 행정절차법 제27조.

31) 행정절차법 제27조의2.

V. 결론

경직법상 손실보상제도를 명문화 한 것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찰관의 안정적인 직무집행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로서 경찰은 국민의 손실보상 청구에 대하여 행정청의 은혜적 처분결정이 아니라 헌법적 근거를 갖는 정당한 법적 청구권에 대한 보상의무를 갖는 것이다.

그리고 경찰의 의무는 손실보상청구에 대한 적법성 검토 후 보상결정과 보상금지급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권자의 행정절차상 제반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손실보상 청구 이후 보상여부 결정까지의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고, 불복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제도 보완과 개선을 통해 적절한 손실보상의 결정으로 국민권익을 보호하고, 명확한 손실보상 판단기준에 따른 적법한 재량행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경찰관들이 소신 있게 적법한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손실보상제도의 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013년 4월 5일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4년 4월 6일부터 경찰의 손실보상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시행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동안 각 지방경찰청별 손실보상 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나타난 제반 법·제도적 문제점들을 시급히 개선하여 국민 권익이 한층 보호되고, 동 제도가 경찰관들의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직무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투고일 : 2016.11.7. / 심사완료일 : 2016.12.10. / 게재확정일 : 2016.12.20.

[참고문헌]

- 경찰청, 「경찰관직무집행법 해설서」, 2013. 10.
- 김남진, 「행정법 I」, 법문사, 2003.
- 김동희, 「행정법 I」, 박영사, 2004.
- 박균성 · 김재광, 「경찰행정법」, 박영사, 2011.
- 서정범 · 박상희, 「행정법총론」, 세창출판사, 2012
- 이상규, 「신행정법론(상)」, 법문사, 1997.
-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3.
-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04.
- 김 진, “손실보상제도의 법적 개선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제33권 제1호, 대한부동산학회, 2015.
- 박창석, “한국헌법사상 보상규정의 변천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제32집 제5호, 한국공법학회, 2004.
-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에서 2014년 4월 6일부터 2015년 4월 5일까지 손실보상심의 위원회에 청구된 사건현황, 청구원인사실 및 심의결과 자료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 자료(<https://www.open.go.kr/>).

[국문초록]

경찰 손실보상제도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김 영 식*

본 연구에서는 2014년 4월 6일부터 시행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법·제도적 관점에서의 분석과 실제 실무상 손실보상 업무 처리에 대하여 검토·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제도 시행 후 1년간의 운영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바, 제도 운영에서의 절차적·실질적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우선, 청구권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상급 지급 청구서 접수부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여부 결정의 통지까지 명시적인 처리기한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손실보상청구와 관련하여 접수단계부터 결과통지 및 불복절차고지까지 각 단계별 처리기간을 명확히 하여 민원인들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경찰민원사무편람에 손실보상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현행 경직법상 손실보상제도는 청구인의 손실보상청구에 대하여 최종 결정이 통보되기 전까지 청구인에게는 의견진술이나 협의의 기회가 보장되어 있지 않고, 처분에 대한 법적 쟁송이외에 재결 절차가 경찰청 차원에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일방적인 감액결정이나 기각결정 후 결과통보를 받은 청구인은 처분에 대한 법적 쟁송을 다룰 수 밖에 없다. 청구권자의 실질적 권익보호를 위해 최종 처분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보장해야 하고, 청구인과 경찰 양측의 소송으로 인한 재정적·시간적 낭비를 막고 통일적인 손실보상 심의를 위해 경찰청 단위의 재결청의 설치가 필요하다.

주제어 : 손실보상, 경찰관직무집행법,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손실보상제도, 손실보상청구사례

*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조교수

[Abstract]

Examination of the Current Police Compensation System and Improvement Strategies

Kim, Young-Si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oss compensation system in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enforced from April 6, 2014. After the examination of the management of the police compensation system after its implementation, several procedural and practical problems are drawn in the operation of the system.

First,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explicit processing unit from the receipt of the compensation claim to the notification of the compensation decision to ensure the procedural rights of the claimant and the predictability of administration. In relation to the claim for loss compensation,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period of each step from the reception to the result notification and the appeals proceedings, so that it can be seen by the complainants, and the matters related to the loss compensation should be included in the police civil affairs manual. In addition, the current system of police loss compensation does not guarantee the opinion of the claimant or the opportunity of consultation until the final decision and the procedure of the reevaluation is not prepared for the claima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nsure the opportunity to submit opinions before the final disposition to protect the actual rights of the claimant, and to establish a ruling authority of loss compensation in the Korea National Police Agency to prevent the waste of time and finances by both the claimant and the police.

* Professor,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Seowon University.

Key words : Loss Compensation,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Loss Compensation Commission, Police Compensation System, Request for Compensation